

On the British Public Library System and Services

英國公共圖書館制度的 考察

韓 淳 晶
英國文化院圖書室長
淑大圖書館學科講師

서 론

1950년은 영국공공도서관법이 통과된 100주년의 해로 1964년은 또한 새 공공도서관법이 통과된 해이기도 하다. 1965년부터 시행된 이 새 법안으로 말미암아 市郡공공도서관에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이 컸다. 五部로 구성된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된 1965년을 중심으로 하여 이 前後의 영국공공도서관제도의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1부에서는 영국공공도서관 설립의 역사를 다루고, 2부에서는 개정공공도서관법의 분석, 그리고 3부에서는 영국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서서비스 4제부에서는 영국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구조의 一例로 London지구의 St. Pancras도서관을 살피고, 마지막 제 5부에서는 영국공공도서관 사서의 대우개선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영국공공도서관설립의 역사

2차대전 당시 영국에서 무려 70개 이상의 도서관이 파괴 또는 파손되었다. 이런 상황하에 영국 Carnegie 재단은 도서관 재조직을 목적으로 戰後의 도서관상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게 하여, 우선 도서관전문교육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전쟁전의 유일한 도서관학교라고는 London 대학교의 도서관학교였어서 많은 공공도서관 사서를 양성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4년에 Glasgow, Leeds, London市, Manchester, Loughborough의 5개商工藝 대학에서 도서관학교를 세웠으며, 1947년에는 Brighton과 Newcastle의 2개 도서관학교가 추가되었다. 1968년에 이르러 도서관학교數는 도합 11개나 되었다. 1950년에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과 도서관협회는 정확하고도 완전한 최신 영국출판물의 기록으로서 주제별목록과 週單位도서관구입목록 그리고 중앙목록서 서비스가 마련된 영국국가서지(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를 출판했다. 이것은 사서들에게나 도서관에서 없어서는 안될 극히 중요한 항목이다.

1950년은 또한 공공도서관법이 통과된 10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도서관협회는 100년간의 영국도서관발전

상을 평가한 두 책자 *A Century of Public Libraries: Where do we Stand Today?*와 *A Century of Library Service*를 펴냈다. 그당시 영국공공도서관의 총 경비는 860萬파운드이고 이 중에서 200萬파운드 이상이 서적구입에 할당되었다. 총 직원수는 거의 11,000명에 달했고 대출도서관수는 3억권이 초과했다. 비록 예산은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一人당 3s.6d.밖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못된다. 議會에서의 도서관 대책에 대한 진보는 없었으며 더구나 大單位도시 도서관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 대단위 도시도서관의 비평자는 (소단위) 郡도서관의 불균형을 지적하고는 반대까지 했다. 비록 郡도서관 역사는 약 40년에 지나지 않지만 시골도서관 봉사활동은 현저한 진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시간제 농촌 도서실제도에서 순회도서관(mobile library)제도로 전환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 이 아동, 순회도서관 제도는 Denbyshire州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이 州에서는 시골도서관을 수년만에 완전히 이 제도로 변환해버렸다.

1953년에 도서관협회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었으며, 1956—57년에 이에 대한 3개의 白書가 나타났다. 문교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Sydney Roberts를 회장으로 하는 도서관협회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케 했으니, 이것이 바로 1959년에 출판된 「Roberts Report」이다. 도서관협회는 최소한 4萬인구당 1個도서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능률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 규모의) 1個도서관당 5천파운드의 도서관구입비를 강조했다. 1961년 문교장관은 도서관협회의 제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2개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능률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필수 조건과 도서관 상호협조 프로그램을 각각 검토케 했다. 첫 분과위원회는 최하 3萬명 인구에 1個 도서관이 존재해야 하며 또한 인구 1,000명당 年 250권의 증가율—

1) Joan M. Stephens and Gordon Moustoe, *Reorganization: the Mobile Contribution*. Library Association(Branch and mobile Libraries Group) No. 7, 1973 참조.

이중 90원은 非소설계 서적——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서관 직원수는 인구 25,000명당 사서 1명의 비율이며 이중 40%의 사서는 (인구 10만명 한도의 도서관에서는) 공인사서(chartered librarian)²⁾라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분과위원회는 현재의 여러 많은 지역단위를 4개 내지 5개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분과위원회 보고서는 1962년에 제출되어 1964년 正月에 下院에 통과되어 7월에 성문화 된 것이다. 이것은 영국도서관 역사상 45년만에 있는 첫 법령으로 1850년의 原법령 이후 완전히 새로 개정된 첫 법안이기도 하다. 1964년의 이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한 법령(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의 제목은 “an Act to place the Public Library Service of England and Wales under the superintendence of the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 to make new provision for regulating and improving that service ...”로 시작한다.

§2. 영국 공공도서관법

이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은 Scotland와 北方 Ireland를 제외한 영국³⁾ 및 Wales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공공도서관 업무는 문교장관 감독하에 집행되며, 편이상 區(district)와 郡(county)의 두 운영 기구로 크게 나누어 집행된다⁴⁾. 전에는 (London을 제외한) 영국지역에 308개의 독립 도서관기구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이 75개로 개편되었으며, 이 중의 39개는 비수도권內 郡에 속하고 나머지 36개는 수도권內 區에 속한다. Wales에도 前 36개의 독립도서관기구가 8개의 新郡기구로 개편되었다.

과거 50년간 영국 공공도서관은 2個 지방행정기구인 市와 郡(municipal (borough and urban districts) and county)에 의해 집행되어 왔었다. 이 양 행정기구의 기본차이는 市행정기구는 大집단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郡행정기구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상대하는데 있다. 大 London시(Greater London)의 여러 도서관기구(library authorities)는 1963년의 런던자치법(the London Government Act)에 의해 형성된 여러 런던 區(borough)를 말한다. 그러나 同年에 또한 이 자치법에 의해 형성된 大런던시의회(the Greater London Council)는 도서관기구가 아니며, 런던市的 도서관기구는 市의회(the Common Council)이다. Wales의 도서관기구는 郡의회(County Councils)이다.

1965년 4월 1일부터 집행된 이 도서관 서서비스 개선법령은 1972년 지방기관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방 당국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영

및 전시품구입에 필요한 자금신청에 있어서 문교장관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중요한 골자는 대개 다음과 같다⁵⁾.

1. 공공도서관 서서비스 개선

처음으로 문교장관에게 공공도서관감독 및 봉사개선권이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무능한 도서관당국자들의 직위해제 및 도서관 당국자들의 능률적인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각 도서관은 문교장관의 검열에 필요한 해당 도서관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s)

국가자문위원회로는 英國지역(Monmouthshire州는 제외)의 자문위원회와 Wales 및 Monmouthshire州의 두 자문위원회가 있다. 이들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도서관시설 및 사용법에 있어서의 현행법의 타당성에 대해 문교장관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이들 자문위원회 회원은 문교장관이 임명하며 이 중에는 공공도서관 행정유경험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역별 도서관 상호협조회(Regional Councils for inter-library cooperation)

문교장관명에 의해 각 지방에 도서관 상호협조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 도서관위원회는 그 지방의 도서관기구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他지역 협조도서관 및 기관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다.

4. 도서관기구의 임무

도서관기구의 임무는 해당지역의 독자들의 도서이용에 최선의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5. 문교장관의 임무

공공도서관을 관할하는 문교장관의 임무는 (1) 각 지방도서관을 감독하며 이들의 서서비스를 개선하고, (2) 자문위원회 의장과 회원을 임명하며, (3) 새 도서관지역을 설정하여 이들의 도서관 상호협조회 설립에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6. 도서관기구 및 지역

a. 기구

2) 영국도서관협회에서 인정하는 사서 자격제도로 다음의 2종 공인사서 자격제도가 있다. Fellow (FLA)——영국도서관협회의 특별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사서로서 적어도 5년간 도서관협회 회원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련의 전문분야의 논문이 있을 경우 도서관협회의 추천으로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Associate(ALA)——준회원은 공인사서로서 2년간 도서관협회의 회원경력이 있어야하며 적어도 3년간의 실무경험(이 중에서 최소한 1년은 사서자격시험 합격이후라야 한다)이 있어야 한다.

3) 여기에서도 London은 제외됨.

4) 자세한 것은 하기 §2.6 “도서관기구 및 지역”란 참조.

5) A.R. Hewitt. *Public Library Law*. 5th edition.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75, pp. 13이하 참조.

영국에는 하기의 여러 도서관기구가 있다.

(1) 런던市 자치區 의회(the Council of a London borough)

(2) 런던市 의회(the 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3) 非大都市 郡의회(the Council of a Nonmetropolitan County)

(4) 大都市지역 의회(the Council of a Metropolitan District)

(5) Scilly島 의회

(6) 共同협의회(the Joint Board in an Area the Subject of a Joint Board Order)

그리고 Wales에는 (1) 郡 의회, (2)도서관당국으로 형성된 지역 의회, (3) 공동협의회가 있다.

b. 지역

공동협의회 관할의 도서관지역은 공동협의회 회원당국들의 합동지역으로 구성된다.

7. 공동협의회(joint board)의 형성법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도서관기구의 합의에 의해 문교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를 경우 행정력은 단일 도서관기구가 아니고 공동협의회가 갖게되며, 각 도서관 직원은 이 공동협의회 직원이 되어 각 도서관의 재산은 이 공동협의회로 명의변경 된다.

8. 도서관기구의 통합 및 협조

지역별 도서관상호협조회는 상기 3에 명시 했듯이 문교장관명에 의해 형성되나 아직도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도서관의회들은 지역내의 도서관기구들간의 상호협조 및 지역의 도서관들과의 상호협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같은 각 지역간 협조(inter-regional co-operation)는 상기 법률에 구상된 것으로서 효과적인 상호봉사를 위해서 문교장관은 지역 도서관협회간에 타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리하여 타지역도서관에서 살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받는자도 자기 지역의 도서관의 혜택을 받게된다.

9. 도서관봉사 및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한 조항

(1) 모든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正規학생(full-time students)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타지역자에게서 봉사의 강요를 받을 수 없다.

(2) 지방 도서관기구는 주민들로부터 등산 및 부동산의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3) 1956년 및 1957년 도서관관련법에 준하며 사서는 연구자에게 1개의 정기간행물에서 1개의 논문만을 복사해 줄 수 있다.

(4) 하기 도표는 각 지역기구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요약한 것이다⁶⁾.

이 章의 마지막으로 이런 도서관 발전을 이트킨 영국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City of London, Common Council	✓	✓	✓
Greater London Council		✓	✓
London Boroughs	✓	✓	✓
Metropolitan Counties		✓	✓
Metropolitan Districts	✓	✓	✓
Non-metropolitan Counties	✓	✓	✓
Non-metropolitan Districts		✓	✓

도서관협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二次대전前의 영국도서관협회는 거의가 공공도서관 위주였다. 예를 들면 1939년도의 도서관협회 年報제목 *General Progress of Libraries*의 ‘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을 뜻했으며 年次회의에 참석한 1,097명의 사서들은 모두 공공도서관 사서들이었다. 그러던것이 1947년에 국립, 정부, 대학, 특수도서관들이 이 기구에 가담하게되었으며 많은 지방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이 회에 가입하므로 말미아마 1961—1963년에 도서관협회가 재편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3년 도서관협회 총무는

도서관협회를 전문기관(a professional body)으로 변환했으며 또한 이들 各層사서들의 동등발언권을 시도했다. 영국도서관의 最發展시기에 공공도서관의 세력은 도서관협회내에서 점점 쇠약하게 된 것은 좀 이상할 정도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항상 도서관협회의 썩기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 *Ibid.*, p. 26.

§ 3. 공공도서관시설 및 서서비스⁷⁾

二次대전후의 공공도서관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Roberts 보고서」⁸⁾에 의하면 1938-39년도 공공도서관건물에 대한 지출은 462,000파운드의 소액에 지나지 아니했다. G.A. Carter에 의하면 戰後 신축비에 지출된 10,000,000,000파운드중에서 도서관 건축비는 불과 2,000,000파운드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거의 80%의 시립도서관 건물은 30년 이상의 옛건물이다. 1950년 戰後 처음으로 L.R. McColvin과 Charles Nowell은 스웨덴을 방문하여 이 방문결과로 3년후인 1953년에 스웨덴의 Tylösand에서 첫 영국-스웨덴 공공도서관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영국사서의 수는 20명이었다. 여기서 영국사서들은 공공도서관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데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얻게되었다. 이들 도서관의 내부장치나 시설은 신축된 Holborn, Hornsey, Great Yarmouth, Luton 등의 공공도서관 건물에 반영되었다. 이들 건물은 모두 스칸디나비아 도서관건물 처럼 공간과 조명을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특히 공간적 여유를 두어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또한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완전히 새로 지은 첫 중앙도서관은 런던의 Kensington도서관과 Holborn도서관으로 후자는 스칸디나비아 영향을 받아 화랑이 구비되어 있다(이와 같은 접촉을 통해 영국사서들은 구라파 또는 타지역 국가도서관을 시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들 도서관은 옛날의 재래식 도서관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선을 끄는 내부장식에 신경을 썼다. 내부나 외부가 모두 보기 좋은 도서관은 Hornsey도서관이고 그 다음이 Norwich도서관이다. 이런 시설개선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수는 25% 이상 증가 되었었으며, 이 새로운 도서관 디자인을 보려 외국에서 많은 관람자가 오게 되었다.

끝으로 오늘날의 영국도서관 서서비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939년의 영국 공공도서관의 총 지출액은 £3,500,000(이중 £800,000은 서적)였으며, 총 대출서적수는 247,000,000였다. 「Roberts 보고서」가 출판된 1959년의 총 지출액은 £18,773,000(이중 £4,550,000은 서적)였고 총 대출도서 수는 396,000,000권이었던것이 1966-67년에 와서는 총 지출액이 £40,000,000(이중 거의 £10,000,000이 서적)을 초과했으며 총대출 서적도 500,000,000권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정규사서수는 총 6,000여명으로 이것은 1938년의 4배에 해당한다. 도서관 직원총수도 23,000여명에 달한다⁹⁾. (또한 물가인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1939년의 도서관지출비는 일인당 2s.6d. 꼴이었으나 1968년에 와서는 어떤 도서

관기구인 경우에는 일인당 £2을 초과하는 수도 있었다. 도시지역에서는 일인당 15s 꼴이고 郡에서는 12s 꼴이다.

금일의 도서관 시설은 1930년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 책에 플라스틱 jacket을 씌우는 것은 별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장서실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많은 “장해물”——옛 형식의 서가, 불편한 의자 등등——이 개선되었으며, 현대식 건물에서 현대식 대출법(예 : photocharging) 등으로 직원들과 독자들의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 봉사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2次대전前에는 특수분야 전문사서(specialist)로는 부서책임자(department heads)뿐이었으나 이제와서는 누구나가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로말미아마 독자들의 질도 향상되었다.

독자의 질의 향상을 초래케한 이유중의 하나는 전문분야의 정보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산업체간의 상호협동 프로그램에 기인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사실 1632년에 J.P. Lamb이 창안한 셰필드市 상호협동회(the Sheffield Interchange Organization)에서 시작한 것으로 20년후인 1951년에 R.D. Rates가 Acton에서 이 제도를 부활시킨것이다. 원래 Lamb의 Sheffield 프로그램은 單一大도서관에 기준을 뒀으나 Rates는 中 켈도서관들도 단합하여 같은 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은 전부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하여튼 독자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공공도서관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 4. 영국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구조의 一例 : St. Pancras도서관을 중심으로

작년 3월에 필자가 런던의 Camden區 소재 St. Pancras 공공중앙도서관¹⁰⁾을 방문했을때 이 도서관의 훌륭한 시설과 많은 이용자를 보고 매우 감탄했다.

1905년에 Andrew Carnegie는 런던 수도구역의 이 St. Pancras도서관에 一鎊을 하사하여 중앙도서관과 4개의 分館(branch libraries)을 건립케 했다. 그러나 1906년에 Highgate에 첫 분관만이 건립되고 나머지 계

7) 이에 대해서는 Frank M. Gardner, "The British Public Library Service," In: Robert F. Vollans (ed.), *Libraries for the People*.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68, pp. 107~129 및 Godfrey Thompson, *Planning and Design of Library Buildings*. London, the Architectural Press, 1973 참조.

8) 상기 § 1. “영국공공도서관 설립의 역사” 참조.

9) 이 통계는 Scotland와 北方 Ireland를 제외한 것임.

10) 이 도서관에 관해서는 William R. Maidment의 소관 프렛 “St Pancras Library and Shaw Theatre”참조 (출판년도 없음).

획은 포기하게 되었다. 뒤가서 도합 7개의 분관이 건립되기는 했으나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은 중단된 것 같았으나 60년초 모든 난관이 극복되어 더더욱 중앙도서관을 Euston Road에 세우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도서관 건립지 앞에는 긴 大路가 있어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곳에 도서관관을 건립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다. 그래서 복잡다난한 교섭 끝에 하층에 市立小극장이 포함된 중앙도서관건립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1964년에 터가 뛰아지고 있을 당시 새로운 Camden 의회가 조직되어 이 의회가 Hampstead, Holborn 및 St. Pancras의 諸의회를 떠맡게 되어 St. Pancras 건립안이 재고되었다. 그러나 St. Pancras를 앞으로 매수하게 될 Swiss Cottage에 위치한 Hampstead도서관과 Theobolds Road에 위치한 Holborn도서관 그리고 또한 一連의 소규모분관을 통합한 새로 개편된 區의 중앙도서관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多목적도서관은 Camden 보다 St. Pancras에 더 필요했었다. 前 수도區도서관들은 질적인 면에서나 대출서비스에 있어서 우수했으나 그레도런던을 제외한 他중요도시의 大참고도서관에는 비교가 안되었다. 수도 런던에는 여러 국립도서관 특수도서관이 있으며 또한 그 지방의 참고도서관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도 불구하고 런던시민은 Birmingham이나 Liverpool 또는 Manchester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어비스에 비교할만한 서어비스를 받지 못했다. 1965년부터 새로 개편된 런던區는 영국의 최대 도시들과 대등하거나 또는 더 나은 도서자원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도서관봉사 계획에 있어서 몇보다도 먼저 개발해야 할 분야는 참고봉사 및 정보제공이었다. 런던市중심지역에서의 큰 문제는 풍부한 참고도서관들을 건립하기에 필요한 넓은 터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그 당시 St. Pancras의 도서관 관장이었던 W.A. Taylor씨는 처음으로 Camden區가 런던의 어느 다른 區보다 몇년 일찍 적은 경비로 보다 진보적인 참고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t. Pancras 중앙도서관의 건립장소를 Euston Road에 정해 놓기만 하고 일의 진전을 보지 못한 관계로 원 계획을 다소 변경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도서관의 일층을 대출부로부터 쓰게 하고 상층에 참고 및 정보제공부를 두게 하는 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수용면적이 부족하여 中層(mezzanine floor)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심한 차량교통으로 말미암아 도서관 정문을 접하고 있는 Euston거리에서 틀리는 소음을 막기 위하여 舍館을 냉온방장치했으며 북쪽 步行路를 접하고 있는 창문의 모든 문을 2중 유리창문으로 방음했다.

이 새 건물의 제일 중요한 부서가 2個층을 차지하고 있는 참고열람실로,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은

상층에 있으며 하층에는 4만권을 저장하게 될 개가식 장서실이 있고 지하실에는 큰 비축저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신속참고봉사부가 특별히 마련되고 있으며, 참고봉사를 도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도, 팸플렛 및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충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로도 연구에 부족할지는 타도서관과 telex로 연락하여 정보를 얻게 해 준다. 또한 광대한 양의 논문요약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책상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諸분야의 최근간행물 및 지남지도 전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복사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구를 위해 개인열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열람실을 장시간 이용하는 독자들을 위해 모자, 의투, 우산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식 저장소가 다수 마련되어 있으며 雨天인 경우에는 더운 공기가 수송관을 통해 이들 저장소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젖은 우비가 마르게 한다. 도서관내 극장휴게실에는 잔식시설, 보관소 및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 시설은 도서관 이용자와 극장이용자가 공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장소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불구자들의 출입편리를 위해 도서관입구에 경사로를 마련하여 이들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바퀴달린 의자에 앉은채로 도서관내부에 들어가 에레베이터를 탈수 있겠끔 해줬다. 또한 극장이용을 하는 불구자들을 위해서도 극장 일층의 앞좌석 몇줄을 치워서 바퀴달린 의자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또한 이들을 위한 휴대품보관소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

일층에 있는 대출부는 참고열람실보다 규모가 적으므로 Swiss Cottage나 Holborn에 위치한 큰 대출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도서실 열람시간은 月—金 오전 9:30—오후 9:00, 土9:30—5:30이다.) 이 도서관은 도서대출업무를 컴퓨터로 완전 자동화한 첫 Camden 도서관으로서 대출뿐만 아니라 반납된 도서중 타인이 먼저 신청해 둔 것을 컴퓨터로 가려내어 이들에게 신속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해준다. 22,000권을 진열할 수 있는 이 대출부의 중간이 빈 안뜰 주위에는 장서가 진열되어 있어서 쾌청한 날씨에는 “책 구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책 구경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약간의 정기간행물도 비치해 둘 수 있다——의 延長室(an extension)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곳에는 안락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편히 독서를 할 수 있으며, 이 안뜰 한 쪽은 극장과 접해있어서 도서관 폐관시에는 간이휴게실주점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별도로 70~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시간, 영화, 강의 등의 특수행사실로나 또는 成人을 위한 모임이나 강의실, 그리고 새로운 극장영점실로도 사용될 수 있

다. 이 방과 인접한 곳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조용히 숙제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 어린이 도서관은 Chalton Street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따로 현관이 마련되어 있다. 극장은 도서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같은 현관을 통해서 도서관과 극장을 출입할 수 있겠끔 되어 있으며, 전시장, 극장로비, 배표소 그리고 타시설도 공용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건물의 最高屬에는 諸Camden도서관의 행정 및 예술분야 서어비스를 위한 諸사무실과 작은 체본실을 포함한 작업실들이 있다. 이 지역의 일부는 앞으로 다른 부서가 들어서도 건물구조를 변경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 도서관과 극장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겠다. “St. Pancras”란 명칭은 근처에 있는 St. Pancras역과 또한 이것이 同名의 옛區의 중앙도서관이어서 이런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도서관의 소극장을 “Shaw”극장이라 함은 George Bernard Shaw가 한때 St. Pancras의회의 회원이었으며 또한 이 지역과 인연이 깊은데서 이런 호칭이 생긴 것이다.

§ 5. NALGO와 공공도서관사서의 대우개선문제¹¹⁾

1919년의 도서관 관련직원에 대한 법령 이후로 공공도서관직원은 지방공공서직원(공공)이 되었다. 사서들은 직업적인면에 있어서는 도서관협회에 의존하고 봉급이나 대우면에 있어서는 Nalgo에 의존했다. 사서들은 밤낮으로 번갈아 도서관에 근무(a shift system)하는 관계로 처음에는 Nalgo支部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도서관 자체는 지부상임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봉사하고 어떤 사서들은 교육위원의 자격으로 봉사했다. 그리하여 도서관직원들은 그 지방의 타공공서직원들과 친근하게 되어 Nalgo노동조합의 혜택을 많이 받기도 했다. 1945년까지만 해도 郡 및 市립도서관 사서들은 초과시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 했을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도서관직원은 다른 직장직원보다 저임으로 채용했다.

이런 사서들에 대한 대우의 근본적인 변화는 2次대전후에 일어났다. 1949년 Nalgo는 고용주로부터 하여금 오래전부터 바랬던 국내봉급의 등급 및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에 합의토록 했다. 이 조건은(일반 노무자의 대우개선안과는 별다른) Scheme of Canditions of Service¹²⁾에 명시되어 있다. 처음으로(당국의 上級종업원시련에 합격한) 도서관 종업원의 등급이 새로 정해진 급수에 의해 매겨지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이 새로운 조항에 의해 초과수당, 휴가, 병가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옛날과 같이 저임급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Nalgo는 5년이나 걸려 공인사서들의 등급기준을 국내 표준등급으로 올려 놓았으며 공인사서직의 최하급제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14년이 더 요했었다.

영국도서관협회는 Nalgo의 공동협의회(Nalgo's Joint Consultative Committee for England and Wales¹³⁾)가 1947년에 창설했을때부터 이것의 회원이었다¹⁴⁾. NJC자체는 행정력이 없기때문에 Nalgo에 요구조건을 제시할 따름이다. NJC의 주감심사는 회원의 보수문제——특히 正規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것이다. NJC의 등급조정위원회(NJC Grading Committee)는 전문직업인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에서 요구한 봉급액을 고용주와 교섭하는 분과위원회이다. 1964년전에는 어느 전문직업인협회도 NJC의 등급조정위원회에 참여시켜주지 않아서 이들중 몇몇단체는 Nalgo와 관계를 끊고 NJC의 고용주쪽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것은 고용주로서나 Nalgo로서도 원치 않는 것이었어 Nalgo는 이들을 등급조정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봉급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게 했다. 이렇게되면 도서관협회는 고용주와 직접 타협할 수 있게되어 공공도서관사서들의 이익을 최고로 도모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성립되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때 그렇게 될수 없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12년간(1964~1976)의 협상역사를 관찰해 보아야 한다.

(1) 1964년 이후의 Nalgo의 공현

그 당시 공인사서의 직위는 APT II였다. 영국도서관협회는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관계에 의거하여 공인사서의 중책 등등을 지적하고 공인사서의 등급을 APT III으로 승진요구를 했다. Nalgo또——비록 1963년의 합의에 의해 3년간(1966년 8월까지) 봉급인상이 불가능 하였지만——이 도협안을 강력히 지지하여 고용주에게 제시하라고 권했다. 고용주도 이 제안

11) NALGO는 the 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ers를 말한다. 이것은 뒤에가서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Association으로 개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William R. Maidment, "Trade Unionism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8 (1976), 143—152 및 Dan Haslam, "NALGO'S Debt to Librarians," *Library Assocition Record* 79 (1977), 251—255 참조.

12) National Joint Council for Local Authorities' Administration, Professional, Technical and Clerical Services, *Scheme of Conditions of Service*, 1946; 8th edition, 1976.

13) =NJC

14) 영국도서관협회는 Nalgo 외에도 대학도서관직원협회(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for University Library Staff) 및 정부도서관 사서조합(the Institution of Professional, Civil Servants for Governmental Libraries) 등의 노동조합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다.

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서 正月에 개정등급제도를 교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도서관협회의 새 규칙에 의해 유자격자로 판정된 공인사서의 직위를 APT Ⅲ으로 하며 또한 증책을 맡고 있는 공인사서의 등급을 비례적으로 승진케 했다. 4년간의 꾸준한 교섭으로 말미암아 이 안이 드디어 현실화되어 1965년 9월에 90개 공공도서관에서 1,101개의 직위가 승진케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1966년에 뜻밖의 일이 생겼다. NJC는 그들의 새로운 APT Ⅲ안을 만들어서 공인사서를 원래의 APT Ⅲ보다 낮게 등급을 매겼을뿐만 아니라 새 수련생등급제도를 창안하여 전문직수련생을 二구름으로 나뉘어 下位구름 수련생의 봉급을 上位구름 수련생 것보다 낮추었다. 놀라운 일은 이와같은 결정을 NJC 기구에 참여하는 어느 전문직업인협회하고도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도협은 (1966년의 年報에 기재되어 있듯이)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리하여 1967년 Nalگو회의에서 도협은 공인사서의 최하등급기준을 옛 기준의 APT Ⅲ으로 하고 수련생간의 등급차별을 폐지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1968년 6월 Nalگو정기회의때 간부평의회(the National Executive Council)는 8월부터 실시되리라고 예상되는 쏘국가공무원봉급 인상관계로 모든 등급조정 문제를 당분간 보류했다.

그 이후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72년에 Nalگو와 도협은 고용주에게 상기의 1967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서등급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인사서의 기본등급을 AP 3-4로 하는 안으로 대치한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물론 고용주는 이 안을 거부했다. 결국 1973년 11월에 등급조정위원회가 뚫였을때 고용주는 요구사항개선에 응하지 않고 도리혀 1967년 요구사항에 명시된 전문직의 직위 재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도협은 단 사서직을 下位로 등급매기는 NJC 직위평가법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기는 했다. 그리하여 사서직을 上位급으로 평가하여야하며 또한 이들의 직위를 같은 사실기관의 직위와 동등하게 평가하도록 결정했다. 1974년 10월 오랜 지연후에 등급조정위원회는 결과를 통고 받았다. 고용주는 비록 재평가된 동등자격의 타공무원의 보수는 AP Ⅲ급이하가 없고 대다수가 AP Ⅲ-N급의 보수를 받는데도 도협이 요구하는 AP Ⅲ-N나 AP N에는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와같은 차별대우에 대한 도협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고용인측에서는 증체에 불이거나 또는 (앞에 언급한) the Scheme of Conditions of Service에서 사서등급에 관한 節을 삭제하는것을 요구했었다. 그리하여 도협은 도서관관

장들로 하여금 양자택일토록 했다. 이 결과 대다수가 후자를 지지하고 반면 Nalگو는 전자를 권했다. 1975년 正月 도협은 Nalگو의 충고를 받아드리도록하고 NJC와 정부자문 및 증재부의 동의하에 다음사항을 결의했다: 공인사서 자격의 직위는 기본 AP N급으로 하고 직책에 따라 上位급으로 승진될 수 있으며, 또한 관계당국자는 유자격 사서들의 公正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속히 (동등급의 他직장의 직위와를 비교하여) 이들의 직위등급심사를 해야한다.

1976년 4월에 Nalگو는 도협에 고용주측의 충무가 NJC에 등급심사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통고했다. 고용주는 심사에 있어서 도서관계의 타직장의 전문직원의 참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서들은 이런 방식의 심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1976말경에 증재로 성립된 조건은 사실상 10년전 1965년의 'AP 3'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Nalگو는 도협회원의 봉급개선에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초과수당인상 같은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2) 고용주의 사서들에 대한 인식

Nalگو가 사서들의 公正등급조정을 성공못시킨 것은 어느정도 NJC의 고용주측의 무식하고 비타협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도서관의 특징이나 목적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여 도서관이 유자격 사서들에 의해 운영된든지 말든 하등 상관치 않은것 같았다. 이들이 상식적으로 사서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것으로는 오로지 도서대출 때 도장찍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필이면 협상고용주들이 이런종의 정부인사들로 구성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로니컬하다. 이들은 사서라는 직책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것 같다. 혹시 사서를 '문서 분석자'(documentation disseminator)라는 인상적이고 어마어마한 직명으로 대치한다면 이들의 사서들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서 다른 '훌륭한'직명이 붙은 전문직업인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3) Nalگو를 대치할 기구가 있을까?

과거 20년간 도협은 보다 효과적인 고용주와의 협상 방법을 강구했었다. 1959년의 불만스러운 처사가 있은 후 도협은 사서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난점은 NJC에 대표가 없는 조합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협상할 수 있는 조합직원이 따로 있어야만 했다. 도협은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1967년 正月 사무직원 및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기존조합들 중에서 사서들이 가담할 수 있는 다음 조합들을 조사해 보았다: the National Union of General and Municipal Workers (NUGMW), the Institution of Professional Civil Servants (IPCS), the National

Union of Public Employees (NUPE); 그리고 the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anagement Staffs (ASTMS). 이 중에서 NUGMW는 주로 노동자와 사무직원들의 조합으로 부당하고, IPCS는 80%가 관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NUGMW와 NUPE와는 달리 NJC의 회원이 아니고, NUPE는 반면 주로 병원, 학교, 지방 행정부, 대학 및 수도국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ASTMS의 지방행정부 고용인증의 사서수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또한 IPCS와 같이 NJC의 회원이 아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결국에 가서 대치안으로 도협을 노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안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적은수로 형성된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Nalگو와 같은 대조합에 비해 적은것임을 깨닫고 Nalگو의 기구를 계속 이용하면서 도협회원의 대우개선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왜그러나하면 앞으로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는데 Nalگو는 이 양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인 동시에 또한 Nalگو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고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Nalگو는 NJC의 조합회원으로 고용인후 대표의 쏠 32석에서 25석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4) 전망

지금과같이 집단적 자유협상이 불가능하며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없고 그에다가 봉급인상마저 중단되어 있는 이때 도협은 현재의 Nalگو와의 관계를 더 한층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도협회원들이 Nalگو의 지부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와같은 합동노력으로 사서직원의 국내기준의 등급조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의무인사들—특히 고용주들의—로 하여금 도서관적 관계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Nalگو는 사서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운동에 강력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 6. 결 론

최근 영국 공공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은 지방행정區의 재편성에 따라 지방자치區의 수가 줄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공공도서관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대규모의 공공도서관 조직망(large library systems)을 통하여 직원, 장서구입 및 관리등의 도서관 행정면에 있어서 재정적 낭비를 막게되고 나아가서는 보다 효과 있고 능률적인 공공도서관 운영과 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데 있다¹⁵⁾. 현 영국내의 불경기상태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영국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봉사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공공도서관 발전면에서 개선

할 문제점이 많은 우리나라의 도서관협회에서도 도서관법의 개정안이 제안된 이때에 본 논문이 한국공공도서관 분야의 도서관법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로서 온 국민에게 보다 훌륭한 공공도서관 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Brown, Roy. "Staffing Public Libraries: a Critique of the LAMSAC Reports," *Journal of Librarianship* 8 (1976), 221—28.

Campbell, H.G. *Public Libraries in the Urban Metropolitan Setting*. London, Bingley, 1973.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Libraries Division). *The Public Library Service: Reorganization and After* No. 2, 1972.

—. *Public Libraries and Cultural Activities*, No. 5, 1975.

Gardner, Frank M. "The British Public Library Service," In: Robert F. Vollans (ed.). *Libraries for the People*. The Library Association, 1968. pp.107—129.

Halsam, Dan. "NALGO's Debt to Librarians," *Library Association Record* 79 (1977), 251—55.

Hewitt, A.R. *Public Library Law*.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5th ed., 1975.

Kelley, Thomas. *History of Public Libraries in Great Britain, 1845—1965*.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75.

Maidment, William R. "St. Pancras Library and Shaw Theatre," [n.d.].

—. "Trade Unionism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8(1976), 143—52.

McColvin, L.R. *The Public Library System of Great Britain*.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42.

Ministry of Education. *The Structure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 in England and Wales*. London, H.M. S.O., 1959 [Roberts Report].

—. *Inter-Library Co-operation in England and Wales*, London, H.M.S.O., 1962.

—. *Standards of Public Library Service in England and Wales*, London, H.M. S.O., 1962.

—.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London, H.M.: S.O., 1964.

Mortimore, Arthur. *Bookstock Exploitation in Branch Librari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Branch and Mobile Libraries Group), No. 5, 1973.

Murison, W.J. *The Public Library: its Origins, Purpose and Significance*. 2nd ed. London, Harrap, 1971.

Stephens, Joan M., and Gordon Mustoe. *Reorganization. the Mobile Contribution*. London, Library Association. (Branch and Mobile Librasies Group), No. 7, 1973.

Taylor, John N., and Ian M. Johnson. *Public Libraries and their Use: a research report on the use of public library buildings with implications for their distribution, location and desig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No. 4, 1973.

Thompson, Godfrey. *Planning and Design of Library Buildings* London, Architectural Press, 1973.

Vickens, P.H. *Automation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No. 6, 1975.

Vollans, R.F. *Library Co-operation in Great Britain*. Report of a Survey of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the Regional Library Bureaux. Natonel Central Library, 1952.

한 순경 "영국도서관 약사 (1975)," 「도협월보」 Vol. 17, No. 10 (1976. 12), pp.19—21.

15) 한순경, "영국도서관 약사(1975)", 「도협월보」, Vol. 17, No.10 (1976. 12), p.21 참조.